

2024-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

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.

※ 2023. 6. 1.부터 백신접종으로는 공인출석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

※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안내 및 코로나19일상회복단의 결정에 따라 아래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1.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대상자인 경우

가. 코로나19 확진자

- 1)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 알림 → 코로나19 검사 → 확진판정일로부터 **5일간** 자가격리
- 2) 증빙자료①구비 →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후 공인출석 발급 →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
※ 증빙자료①: **확진자 통보 서류(SMS, 우편물 등)**

나.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

- 1)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 알림 → 코로나19 검사 → 검사결과 수신까지 자가격리
- 2) 증빙자료②구비 →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후 공인출석 발급 →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
※ 증빙자료②: **진료확인서, 소견서, 출입국사실증명서, 검사 관련 SMS 등 택1**
※ 감기 등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내방 시 실시하는 검사는 코로나19 검사에 미포함
(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에 코로나19 검사기록 없을 경우 불인정)

2. 학생의 동거인(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)이 자가격리자(코로나19대상자) 경우

→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

3. 출결 유의사항

- 인터넷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
※ 단,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대면 및 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을 예외로 함

2024. 3.

교무처장